

의안번호	2220040
의 퇴 인	김민전의원
회 답 일	2026.7.23.
추계번호	26D36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1조제8항·제9항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 특수투표용지와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사진·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·사용할 수 있고, 해당 선거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하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1조제8항·제9항 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등의 제작·사용 및 투표소 비치(안 제151조제8항 및 제9항)

- 개정안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 특수투표용지와 발달장애 등을 가진 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사진·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·사용, 해당 선거인의 신청에 따른 투표소 비치를 규정하여 관련 투표용지·투표보조용구의 제작 및 투표소 비치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예상

-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 특수투표용지는 이미 사용 중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- 다만, 발달장애 등을 가진 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사진·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, 투표보조용구는 신규로 개발 및 제작이 필요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다만,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후보자의 사진·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등의 구체적인 규격, 제작 비용, 관련 장비의 개발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보건복지부의 2025년 말 기준 ‘장애인 등록현황’자료 중 연령별 자폐성¹⁾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2026년 18세 이상이 되는 발달장애 선거인 수를 추정하면 21,719명

1)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르면,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,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본 미첨부사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현황 자료의 자폐성 장애인을 개정안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으로 가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